

의안번호	2219343
의 퇴 인	최민희의원
회 답 일	2026. 8. 25.
추 계 번호	26B2931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시청각미디어광고 종류를 단순화하고, 시청각 미디어교육종합계획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4억 800만원 (연평균 8,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 중 비용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연평균
시청각미디어광고 종류 단순화 (안 제36조제2항)	99	100	—	—	—	199	40
시청각미디어교육 종합계획 수립 (안 제72조제2항)	75	—	—	—	—	75	15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 기본계획 수립 (안 제87조제2항)	67	—	—	67	—	134	27
합 계	241	100	—	67	—	408	82

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시스템 개선의 시기·내용 및 비용,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심의규정)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공공성 및 공적 책임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청각미디어서비스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17조(재산상황의 공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시장의 투명한 회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매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재산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제2항)	의무규정
3	안 제19조(공영방송에 대한 지원)	제18조에 따른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운영 및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1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7항, 제8항에서 정한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방송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4	안 제29조(편성)	공영방송서비스사업자와 지상파방송서비스사업자는 제70조에 따른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시청 지원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에 필요한 재원 등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5	안 제35조(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편성과 배치 등)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채널 서비스사업자가 장애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36조(시청각미디어광고 등)	시청각미디어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시청각미디어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1. 프로그램 외 광고: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프로그램 시작 전후 또는 프로그램 중간에 별도의 광고 시간대를 구성하여 송출되는 광고 2. 프로그램 내 광고: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그램 속에서 제품, 서비스, 브랜드를 노출하는 광고 3. 그 밖의 광고: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거나 어느 하나로 분류하기 어려운 광고(제2항)	의무규정
7	안 제38조(협찬고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자신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을 받은 경우 협찬고지를 하여야 한다.(제1항)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기능, 효능 또는 효과를 다루는 경우에는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찬고지를 하여야 한다.(제2항) 협찬고지에 관한 시간·횟수·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이에 따라 협찬고지를 하여야 한다.(제3항)	의무규정
8	안 제40조(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제39조제1항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둔다.(제1항)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인 이내로 위촉한다.(제2항)	의무규정
9	안 제52조(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기술기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10	안 제65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제1항)	의무규정
11	안 제68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정부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안 제69조(시청자 보호업무 평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매년 시청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	의무규정
13	안 제70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통한 재난정보의 전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 재난정보의 전파를 요청할 수 있다. 재난정보를 담당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량규정
14	안 제71조(장애인 시청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하는 자가 장애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15	안 제72조(시청자 역량강화 및 시청각미디어 교육의 지원)	정부는 시청자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제1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청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시청각미디어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2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에 대한 시청각미디어 교육을 지원하여야 하며 시청각미디어 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청각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둔다. (제3항)	의무규정
16	안 제73조(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및 시청자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제1항)	의무규정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제5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제7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7	안 제74조(공정경쟁의 촉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이하 “시청각미디어서비스경쟁상황평가”라고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제2항)	재량규정
18	안 제75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청각미디어서비스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둔다.(제1항) 시청각미디어서비스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제2항)	의무규정
19	안 제79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시청각미디어서비스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 대상이 저작권에 관련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제1항) 1.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3. 외주제작사	재량·의무 규정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2항)	의무규정
20	안 제87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을 위한 시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2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제5항)	의무규정
21	안 제88조(시청각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제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1항) 1.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제작의 창업 지원 2.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에 대한 민간의 투자 활성화 지원 3. 창의적, 실험적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제작, 송출, 유통 지원 4. 공공·공익적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제작, 송출, 유통 지원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2	안 제89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기술개발 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1항) 1.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 기술의 확산 및 실용화 3.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 기술의 산학협동 촉진 4.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 기술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5. 그 밖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에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23	안 제90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 해외 진출 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해외 진출 및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국내외 유통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1항) 1.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해외 진출 관련 국내외 기술 및 시장, 정책 분석 2.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국내외 유통 관련 유망 사업 발굴 및 확산 3.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해외 진출 및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 국내외 유통 관련 마케팅·홍보 지원	의무규정
24	안 제91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1항) 1.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문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대한 조사 및 연구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3.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4.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기술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학교 등 교육기관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 교육의 지원	의무규정
25	안 제92조(세제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각미디어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6	안 제93조(지역 및 중소기업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 및 중소기업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제2항) 1. 공동제작, 송출, 유통시설 구축 2. 대·중소 사업자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3. 경영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의무규정
27	안 제94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 국제협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외국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관련기관·단체와의 국제교류, 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공동제작, 시청각미디어 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기술의 공동개발 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28	안 제95조(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원)	시청각미디어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제1항)	의무규정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제3항 각 호의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29	안 제96조(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협회)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30	안 제10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1항)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또는 제95조의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제정안은 현행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인터넷 방송법”)을 폐지¹⁾하면서, 두 법에서 규율하는 방송 및 인터넷방송뿐만 아니라 OTT²⁾ 등을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규율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취지임

※ [참고자료] 제정안과 현행법(방송법, 인터넷방송법) 간 규율 대상 비교

- 아래의 제정안 조문은 현행 방송법 및 인터넷방송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오거나 제정안의 규정 대상(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맞게 기존 조문들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사업들이 유지되거나 규정 대상 확대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표 2] 제정안과 현행법(방송법, 인터넷방송법) 간 관련 조문 비교

제정안 조문	현행법 조문
안 제14조(심의규정)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인터넷방송법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안 제17조(재산상황의 공표)	방송법 제98조의2(재산상황의 공표)
안 제19조(공영방송에 대한 지원)	방송법 제61조(보조금등)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4조(보조금 등)
안 제29조(편성)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인터넷방송법 제16조의3(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제공)
안 제35조(시청각미디어프로그램의 편성과 배치 등)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인터넷방송법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1) 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방송법」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2)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등록제를 적용받아 운영 중임

제정안 조문	현행법 조문
안 제38조(협찬고지)	방송법 제74조(협찬고지) 인터넷방송법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안 제40조(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법 제76조의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안 제52조(설비 보유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기술기준)	방송법 제79조(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 인터넷방송법 제14조의2(기술기준의 고시)
안 제65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송법 제35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안 제68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방송법 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안 제69조(시청자 보호업무 평가)	방송법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제90조의3(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인터넷방송법 제16조의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안 제70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통한 재난정보의 전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인터넷방송법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안 제71조(장애인 시청지원)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인터넷방송법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안 제73조(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안 제74조(공정경쟁의 촉진)	방송법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인터넷방송법 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
안 제75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경쟁상황평가위원회)	
안 제79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송법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88조(시청각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법 제92조의2(애니메이션 제작 세제지원), 제95조(방송제작단지 조성·지원), 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안 제91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방송법 제94조(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안 제92조(세제지원)	방송법 제92조의2(애니메이션 제작 세제지원)
안 제93조(지역 및 중소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원)	방송법 제92조의3(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안 제94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 국제협력)	방송법 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안 제101조(권한의 위임·위탁)	방송법 제103조(권한의 위임·위탁) 인터넷방송법 제26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자료: 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그 외,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는 다음과 같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6조(시청각미디어광고 등)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 - 시청각미디어광고 유형 단순화에 따른 ‘방송광고 협찬고지 분석시스템’ 개선(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추계									
2	안 제72조(시청자 역량강화 및 시청각미디어 교육의 지원)	○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 - ‘시청각미디어교육종합계획’ 수립 비용 추계 - 다만, 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시청각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의 신분 및 인원 수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3	안 제87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을 위한 시책)	○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 -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 기본계획’ 수립 비용 추계 - 다만, 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연도별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별도의 연구용역 없이 자체 인력으로 수립 가능하다는 의견임									
4	안 제89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관련 일부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 중으로, 제정안에 따라 사업 규모 등이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예산('26)</th></tr><tr><td>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td><td>방송미디어 제작-유통-소비 순과정에 AI·디지털 기술융합을 위한 제작,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td><td>9,767</td></tr><tr><td>프로그래머블 미디어핵심 기술개발</td><td>방송기획·제작공정에 디지털·AI기술 적용, 기획·제작된 영상을 자유롭게 변경가능한 “프로그래머블미디어” 핵심 기술 개발 추진</td><td>4,000</td></tr></table>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26)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방송미디어 제작-유통-소비 순과정에 AI·디지털 기술융합을 위한 제작,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	9,767	프로그래머블 미디어핵심 기술개발	방송기획·제작공정에 디지털·AI기술 적용, 기획·제작된 영상을 자유롭게 변경가능한 “프로그래머블미디어” 핵심 기술 개발 추진	4,000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26)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방송미디어 제작-유통-소비 순과정에 AI·디지털 기술융합을 위한 제작,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	9,767										
프로그래머블 미디어핵심 기술개발	방송기획·제작공정에 디지털·AI기술 적용, 기획·제작된 영상을 자유롭게 변경가능한 “프로그래머블미디어” 핵심 기술 개발 추진	4,000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5	안 제90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 해외 진출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자의 해외 진출 및 국내외 유통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 중으로, 제정안에 따라 사업 규모 등이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예산('26)</th></tr><tr><td>방송콘텐츠 진흥 (AI·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td><td>국내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디지털 기반의 방송 중단계(기획-제작-유통) 지원</td><td>9,880</td></tr><tr><td>방송콘텐츠 진흥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기반 조성)</td><td>우수 크리에이터 미디어 창작자의 글로벌 기업·브랜드 박람회 참가 및 현지 프로젝트 지원</td><td>4,320</td></tr><tr><td>1인미디어 콤플렉스조성</td><td>크리에이터 미디어 특화 인프라 구축·운영 및 기업 성장 육성</td><td>4,157</td></tr><tr><td>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td><td>지역·중소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등</td><td>5,464</td></tr><tr><td>OTT 산업 경쟁력 강화</td><td>국제 OTT 포럼 개최, 해외 OTT 시장·이용행태 조사 등을 통한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 확충</td><td>600</td></tr></table>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26)	방송콘텐츠 진흥 (AI·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국내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디지털 기반의 방송 중단계(기획-제작-유통) 지원	9,880	방송콘텐츠 진흥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기반 조성)	우수 크리에이터 미디어 창작자의 글로벌 기업·브랜드 박람회 참가 및 현지 프로젝트 지원	4,320	1인미디어 콤플렉스조성	크리에이터 미디어 특화 인프라 구축·운영 및 기업 성장 육성	4,157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역·중소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등	5,464	OTT 산업 경쟁력 강화	국제 OTT 포럼 개최, 해외 OTT 시장·이용행태 조사 등을 통한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 확충	600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26)																
			방송콘텐츠 진흥 (AI·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국내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디지털 기반의 방송 중단계(기획-제작-유통) 지원	9,880																
			방송콘텐츠 진흥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기반 조성)	우수 크리에이터 미디어 창작자의 글로벌 기업·브랜드 박람회 참가 및 현지 프로젝트 지원	4,320																
			1인미디어 콤플렉스조성	크리에이터 미디어 특화 인프라 구축·운영 및 기업 성장 육성	4,157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역·중소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등	5,464																
			OTT 산업 경쟁력 강화	국제 OTT 포럼 개최, 해외 OTT 시장·이용행태 조사 등을 통한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 확충	600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6	안 제95조(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시청각미디어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진흥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진흥원의 조직 규모 및 설립 방식, 수행 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7	안 제96조(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협회)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등이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협회 수행 사업의 내용 및 규모,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시청각미디어광고 종류 단순화(안 제36조제2항)

- 제정안은 시청각미디어광고의 종류를 현행 방송광고의 ‘7개 유형(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³⁾’에서 ‘3개 유형(프로그램 외 광고, 프로그램 내 광고, 그 밖의 광고)’으로 단순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표 3] 현행 및 제정안에 따른 광고 종류 비교

현행 (방송법)	총량제한	총량제한	총량+ 시점제한	총량제한	총량+ 횟수제한	총량제한	총량제한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

제정안	프로그램 외 광고(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중간광고)					프로그램 내 광고
	그 밖의 광고(시보광고, 자막광고)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라 시청각미디어광고의 종류를 단순화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방송광고 협찬고지 분석시스템의 개선(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3)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6. 가상광고 :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7.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송광고 협찬고지 분석시스템은 방송광고의 유형마다 광고총량을 산출하며, 광고크기 및 위반비율 등을 자동으로 산출한 결과를 생성·제공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시청각미디어광고 유형이 단순화될 경우 광고 총량 산정 및 위반 판단 기준이 달라지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표 4] 방송광고 협찬고지 분석시스템 개요

○ (목 적) 매월 정기적으로 326개 채널('26년 기준)에 대한 방송법 위반 여부(방송광고 시간·횟수 제한 위반 등)를 판단할 수 있는 S/W를 개발하고, 위반영상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장비 등 H/W를 2014년부터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 ○ (기 능) 방송사업자들이 편성한 방송광고가 방송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분석 및 위반 영상 보관, 모니터링 직원이 안정적으로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 등 운영 ○ (예 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26)
방송광고 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	- (모니터링분석시스템 구축) 분석시스템을 통해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하고 시스템 고도화로 안정적인 모니터링 환경 조성 - (방송광고 협찬고지 모니터링 운영) 광고시간, 가상광고, 간접광고, 협찬고지 및 비상업적 공익광고 관련 법규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인력 및 사업 운영	1,692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방송광고 협찬고지 분석시스템의 개선(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추계함

[표 5] 제정안에 따른 방송광고 협찬고지 분석시스템 개선 계획(안)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개편 내용	보고서 Tool* 구입 및 기본 로직 재설계 *웹페이지편집소프트웨어, 포시에스, OZ Report 8.0, 웹리포팅솔루션, 4Core	통계 정보, 리포트 기능 개선 등 관리자 기능 단계별 고도화 및 개발 오류 수정
소요 비용	99,410,000원	100,000,000원
산출 근거	- 소프트웨어(보고서Tool) 단가 : 17,908,000원 (조달청 조달단가 적용) -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231.4점×기능점수 단가605,784원×보정계수(규모1.28×연계복잡성0.88×성능0.95×운영환경1.0×보안성1.0)] + 이윤 10% + 부가가치세 10% ※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5년 개정판)」에 따라 기능을 단위 프로세스로 나눠 유형을 분류하고가중치를 부여하여 총 기능점수를 산정(간이법)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시청각미디어광고의 종류를 현행 7개 유형에서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1억 9,900만원(연평균 4,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시청각미디어광고 종류 단순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시청각미디어광고 종류 단순화	99	100	—	—	—	199	40

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시스템 개선의 시기, 내용 및 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시청각미디어교육종합계획의 수립(안 제72조제2항)

- 제정안에 따른 시청각미디어교육종합계획 수립 비용은 특정분야 교육과 관련된 교육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사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

[표 7] 특정분야 교육 관련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연구용역명	사업연도	예산
교육부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종합계획」 기초연구	2023	70
기후에너지환경부	「제4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연구	2024	80
평 균			75

자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내용 참조

- 시청각미디어교육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 중 1차년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청각미디어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7,500만원(연평균 1,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시청각미디어교육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연평균
시청각미디어교육 종합계획 수립	75	—	—	—	—	75	15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7조제2항)

- 제정안에 따른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 분야 중장기 정책·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

[표 9] 방송·미디어 분야 중장기 정책·전략 수립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연구용역명	사업연도	예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산업 진흥전략 수립 관련 연구	2026	80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을 위한 종합 전략 연구	2023	54
평 균			67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 중 1차 및 4차년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1억 3,400만원(연평균 2,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연평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발전 기본계획 수립	67	—	—	67	—	134	27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시스템 개선의 시기·내용 및 비용,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제정안과 현행법(방송법, 인터넷방송법) 간 규율 대상 비교

구 분 (제정안에 따른 정의)	방송법 규율대상	인터넷방송법 규율대상	제정안에 따른 추가 규율대상
공영방송서비스	♦ KBS, MBC, EBS		
지상파방송서비스	♦ KBS·MBC·EBS 제외 지상파방송사업자		
보도채널	♦ 종합편성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편 PP) ♦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 PP)	♦ 종합편성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중편 CP) ♦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보도 CP)	제정안 문안에 따르면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는 채널사업자’ 도 포함될 가능성 있음
공동체라디오방송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상품소개판매채널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 PP)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홈쇼핑 CP)	제정안 문안에 따르면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는 채널사업자’ 도 포함될 가능성 있음
보도 및 상품소개판매채널 이외의 채널로서 시청각미디어콘텐츠를 제공하는 채널	♦ 중편, 보도, 홈쇼핑 PP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중편, 보도, 홈쇼핑 CP를 제외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CP)	제정안 문안에 따르면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는 채널사업자’ 도 포함될 가능성 있음
비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서비스	♦ 방송VOD(진입규제 신고)		인터넷VOD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서비스			크리에이터
설비 보유 시청각미디어 플랫폼서비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제공플랫폼서비스			OTT ※ 다만, VSP(비디오공유 플랫폼) 유형 OTT는 제외(별도 분류)
시청각미디어콘텐츠 공유플랫폼서비스			VSP 유형 OTT